

학교법인 응지학원

2023학년도 5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7인	재적이사	5인
------	----	------	----

1. 일시 : 2023년 10월 25일 16:00~16:30

2. 장소 : 원격화상회의(네이버밴드)

3. 임원출석현황

○ 참석 임원

- 이사(5인) : 임종하, 김영권, 김정철, 이인호, 이용이
- 원격화상회의 -

○ 불참 임원

- 이사(인) :

4. 안건

(1) 학교법인 정관 개정

(2)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

(3)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개정

(4) 교원인사규칙 규정 개정

(5) 기타사항

<간서명>

임종하 김영권 김정철 이인호 이용이

5. 회의 내용

이사장 임종하 : 웅지학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준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이사장수 7명, 재적이사 5명 중 5명이 참석함을 화면으로 확인함으로써 정관준칙에 의하여 과반수가 참석 이사회 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말하며(사립학교법 제18조제2항, 정관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원격영상회의로 이사회 개최함), 교육부공문 고등직업교육정책과-6274(2023.08.10.)에 관련하여 웅지학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님들의 전원동의로 1주일 전 회의개최 고지 없이 개최함을 말한다.

이사장 임종하 : 제1안건으로 학교법인 정관 개정 건이며 미리 보내 드린 자료 참조해 주기를 부탁하며 안건으로 상정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거수로 찬성하다.

이사장 임종하 : 제2안건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상정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거수로 찬성하다.

이사장 임종하 : 제3안건으로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개정을 상정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거수로 찬성하다.

이사장 임종하 : 제4안건으로 교원인사규칙 개정을 상정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 원 : 거수로 찬성하다.

<간서명>	이종하	김민준	이영호
-------	-----	-----	-----

이사장 임종하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과 회의조서에
전원동의로 김정철 이사, 이용이 이사, 임종하 이사장을 간서명자로
의결하고 추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사회를 폐회를
선언하다.

2023. 10. 25. 16시 30분

위 사실을 확인함

6. 폐회 선언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임종하 (서명)

이사 김영권 (서명)

이사 김정철 (서명)

이사 이용이 (서명)

이사 이인호 (서명)

<간서명>

김영권

김정철

이/용/이

학교법인웅지학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대학평의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09.>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2023.09.22.>	사립학교법 적용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1.09.>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23.09.22]	사립학교법 제21조 7항 적용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의거하여 겸임교원, 명예교수는 겸직금지 대상에 미포함 한다.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9.22.> ④ 삭제 <2023.09.15.>	③ 지구수정 교육부 시정요구 ④ 법 해석으로 인한 삭제
제31조(이사회소집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1조의2(대학평의위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분리 함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 2.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항		1. 수익사업범위 확대 2. 회계·세법연구소를 설립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76에 둔다. <개정 2012.03.16.>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79, 380, 380-1, 380-2에 둔다. <개정 2012.03.16, 2023.09.22>	수익용기본재산 등기부등본 주소지 기재
제1관 임명 제39조(임용) 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05.14, 2006.11.09, 2023.02.08.> ② 총장의 임기는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1.09, 2009.09.21, 2014.02.27, 2023.02.08.> ③ 총장이 임기 중에 정년 도래시는 정년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신설 2014.02.27, 2023.02.08.>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조교수, 부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 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하 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05.14, 2006.11.09, 2023.02.08.> ⑤ 제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당해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9, 2015.11.18, 2023.02.08.>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관 임용 제39조(임용) 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총장의 임기는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05.14, 2006.11.09, 2023.02.08, 2023.09.22.> ② 총장이 임기 중에 정년 도래시는 정년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신설 2014.02.27, 2023.02.08.> [종전 ③항을 ②항으로 이동<2023.09.22>] ③ 총장을 제외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3.09.22.>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조교수, 부교수,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하 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05.14, 2006.11.09, 2023.02.08, 2023.09.22.> ⑤ 제4항 이외의 비전임교원은 당해 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당해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9, 2015.11.18, 2023.02.08, 2023.09.22> ⑥ ~ ⑦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임명-임용 기존 제39조 제1항과 제2항 통합함 종전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제3항 신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함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와 조항과 일치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02.28, 2006.11.09, 2015.11.18, 2023.02.08.> 1. 근무기간 (단, 계약기간은 교원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사항. 5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02.28, 2006.11.09, 2015.11.18, 2023.02.08, 2023.09.22.> 1. 근무기간 (단, 계약기간은 임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9.22.> 2. ~ 3. 현행과 같음 4. 업적 및 성과 : 교육·연구실적·학생지도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2.> 5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 제1항1호 계약기간은 임용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47조의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3(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 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학연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강사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중전 제39조의3 삭제 <본조 신설 2023.09.22.>] 제47조의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3.09.22.>	제39조의3(비전임교원) 우수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단, 정관 제39조제4항의 교원에 한한다. <개정 2015.11.19, 2023.02.08.>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02.28, 2006.11.09, 2018.11.18.>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교원의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기간제임용 등)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 2023.02.08, 2023.09.22.>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前) 임용기간 중 제3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및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8, 2006.11.09, 2018.11.18, 2023.09.22.>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교수·연구·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제49조제1항1호 교원의 임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제39조 제3항 규정의 신설규정으로 기존 2항을 2항과 3항으로 세분하여 분리함

제50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장 등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0.03.15., 2023.02.08.> ② 현행과 같음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업적 평가규정으로 정하고 임용계약서에 반영한다. <신설 2023.09.22.> 제5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장 등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15., 2023.02.08., 2023.09.22.> ②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조직을 구성으로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11.15., 2023.02.08.>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2.08.> 제57조 삭제 <2006.11.09.> 제58조 삭제 <2006.11.09.> 제59조 삭제 <2006.11.09.> 제60조 삭제 <2006.11.09.> 제61조 삭제 <2006.11.09.> 제62조 삭제 <2006.11.09.> 제63조 삭제 <2006.11.09.> 제64조 삭제 <2006.11.09.>	제54조2(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의결된 내용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알고 있는 회의내용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9.22> 제2절 징 계 <개정 2023.09.22> 별첨자료(정관 제56조 ~ 제64조의3) 참조	교육부시정요구 사항 사립학교법 적용

제71조(징계)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2.08.>		
	제71조(징계)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02.08, 2023.09.22.> 제80조(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9.22.> 제80조의2(행동강령) ① 제8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사학기관,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3.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환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22.>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2023.09.22.>]	교육부시정요구 사항 신설 규정 사립학교법 규정 제72조의4(청렴의무),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부 칙 <27판-개정 2023.09.22.>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

제2절 징 계 <개정 2023.09.22>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교원이 학기도중 해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임하였을 때
5. 교직원이 교내에서 집단행위, 집단농성 등 해교행위를 하였을 때
6. 교직원이 학내 문제를 언론에 알려 학교법인과 대학의 명예를 실추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56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7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4조2의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0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0조의1(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0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 56 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1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의결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3(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교원의 임용(신규임용, 기간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 제정·동의를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교원의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기간제임용 등) 제정·동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2.>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9.22.> 3.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임용제정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前) 임용기간 중 정관 제3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및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2.>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교수·연구·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업적 평가규정으로 정하고 임용계약서에 반영한다. <개정 2023.09.22.>	정관 변경에 따른 개정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2.0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2.08.> [기존의 3항과 4항 위치 이동]	정관변경에 따른 수정 2항 자구수정 기존의 3항과 4항 정관 규정에 맞게 재배치함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09.22.>	정관변경에 따른 수정

부 칙 <제6판-개정 2023.09.22.> <시행 2023.10.30.>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2.08>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57조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02.08, 2023.09.22.>	정관변경에 따른 수정 (사립학교법 규정 적용)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임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고 [별지1회] 서식에 따라 교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검임기관의 장이 검임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02.08>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임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고 [별지 1회] 서식에 따라 교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검임기관의 장이 검임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02.08, 2023.09.22.>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09.22.>	"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통지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실을	"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 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 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 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 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단,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징계혐의자의 해외체제, 여행 및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등 기타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케 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장은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9.22.>

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 "2023.10.1" and "10.1" are present in the center of the page.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기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09.22.>	
제10조 (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u>교원징계의결서</u>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u>증거</u>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 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적결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정관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u>징계의결서</u>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지 3호] 징계의결서 및 [별지 4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9.22.>	"
제1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09.22.>	"
제12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12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현행과 같음 3. 정직 :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3회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직시킨다. 4.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하여 지급하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5. 견책 : 본인의 직무에 종사하며 전과를 반성토록 반성문을 제출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 <개정 2023.09.22>	
제13조(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09.22>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준 제14조는 제13조5항으로 이동]	정관변경에 따른 수정 제2항 자구수정 기준 제14조는 제13조4항으로 이동
제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징계 양정 기준)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서식」에 명시된 징계 양정기준에 의거 징계한다. <신설 2023.09.22>	정관변경에 따른 수정 (사립학교법 적용)
제16조(징계사유)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6조(징계사유)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22>

부 칙 <3판-개정 2023.09.22.> <시행 2023.10.30.>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cc

1. 2

10.1

▣ 교원인사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임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원은 학과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할 경우 학과 소속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2015.07.07.>	제7조(임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2023.09.22.>	정관 개정으로 인한 교원인사규칙 개정
제8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단, 임용대상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때는 총장의 제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05.30., 2018.10.30.>	제8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정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05.30., 2018.10.30., 2023.09.22>	"
제9조(임용계약) ① 교원은 정관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나. 다. 현행과 같음 2. 보수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용계약) ① 현행과 같음 1. 근무기간 : (단, 계약기간은 임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9.22.> 가. 나. 다. 현행과 같음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09.22.>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9.22.> ② ~ ④ 현행과 같음	정관 개정으로 인한 교원인사규칙 개정 2. 보수를 급여로 자구수정 3. 강의를 교수 6. 상위법인 정관과 일치
제22조(재임용대상 및 기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으로 제2항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임용대상 및 기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 단, 임용기간 중 2편 이상 연구문물을 작성하여 관련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한 교원은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9.22.> ② ~ ④ 현행과 같음	정관 개정으로 인한 교원인사규칙 개정

제24조(재임용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재임용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자구수정함

부 칙 <개정 2023.09.22.>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2
3

1
2
3